

안내문

안녕하세요?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파리따스마태오요양원에서는 입소 어르신의 기본적 권리를 존중하고 인권을 보호하며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인인권보호 및 노인학대예방 대응지침 자료를 발송해 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노인인권보호 및 노인학대 예방 대응지침 ”

1. 노인인권보호

노인복지시설(이하 시설) 생활노인은 다음과 같은 기본적 권리를 가지며 어떠한 이유로도 권리의 침해를 받아서는 안되며, 국가와 시설은 생활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1) 존경과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고, 차별·착취·학대·방임을 받지 않고 생활 할 수 있는 권리
- 2) 개인적인 욕구에 상응하는 질 높은 수발(care)과 서비스를 요구하고 제공 받을 권리
- 3) 안전하고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 4) 시설 내·외부 활동에서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 5) 개인적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 6) 우편, 전화등 개인적 통신을 주고 받을 권리
- 7) 정치적, 문화적, 종교적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
- 8) 개인소유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 9) 비난이나 제약을 받지 않고 시설운영과 서비스에 대한 개인적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이의 해결을 요구할 권리
- 10) 시설 내외부에서 개인적 활동, 단체 및 사회적 관계에 참여할 권리
- 11) 시설 입·퇴소, 일상생활, 서비스 이용, 제반 시설활동 참여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정보에 접근하고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권리

2.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

3. 노인학대의 유형 7가지

1) 신체적 학대

물리적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2)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3) 성적 학대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4) 경제적 학대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아가는 행위 (경제적 착취, 노인의 재산에 관한 법률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 결정에서의 통제등)

5) 방임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필요한 생활비, 병원비 및 치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6) 자기 방임

노인 자신의 육체적·정신적 건강을 위해 필요한 자원이나 서비스를 노인 스스로 거부하는 행위

7) 유기

의존적인 상태의 노인을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버리는 행위

4. 노인학대 신고·상담 전화

전국 어디서나 1577-1389

5. 이에 본 까리따스마태오요양원은 어르신이 존경과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고 개인적 욕구에 상응하는 질 높은 돌봄과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의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 지침에 따라 모든 어르신과 직원들에게 인권 및 노인학대 예방교육 실시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설생활 어르신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6.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요양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까리따스마태오요양원장



우 24770 고성군 토성면 버리깨길 42
전화 033-638-6004 전송 033-638-1170

/ www.caritasmateo.com
/ mt0032@hanmail.net